

중재제도유용성과 부산지역기업들의 인식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Busan firms' Perception of
Usefulness of Arbitration System

박 봉 규* Bong-Gyu Park
신 군 재** Koon-Jae Shin

〈 목 차 〉

- I. 서 론
 - II. 중재제도 유용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및 가설설정안
 - III. 부산지역 무역기업의 중재제도 유용성에 대한 가설검증
 - IV. 결 론
- ABSTRACT
참고문헌

주제어 : 중재의 장점, 중재인의 자질, 중재결과에 대한 인식도, 중재절
차의 만족도, 부산기업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교수

** 신라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정보학전공 조교수

I. 서론

범지구화라고 불리는 21세기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에 접근 가능성을 용인하게 만들어 이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무한 경쟁시대라는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기업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마케팅활동에 전력해야만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마케팅활동의 강화로 거래가 빈번해지면 그에 따라 기업들은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기업들이 마케팅활동에 보다 전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발생된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대체적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라 칭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ADR 방법중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구속시키며, 국제적으로 최종 해결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재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1966년 중재법제정과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40년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설립된 지 4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중재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부산지역 무역업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행하였다.

II. 중재제도 유용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및 가설설정

1. ADR의 개념 및 부산지역 클레임 현황

(1) ADR과 중재의 개념

ADR이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통적인 재판절차를 대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수단들을 총칭한다¹⁾. ADR에서는 분쟁해결을 대립적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의 문제해결 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의 형태로 보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DR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조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이동하면서 법관에 의한 결정이나 법을 통한 권위주의적 해결보다는 당사자들간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의식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신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을 위해 단순하고, 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적 조치로서 ADR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소송폭증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2년도 연방대법원장이었던 Warren Burger가 법원의 업무폭증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과 중재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D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ADR은 신속하게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행정부에서도 노사분규, 환경분쟁 등 기존의 행정행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ADR을 이용하고 있다²⁾.

1)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11.

2)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 p.7

대표적인 ADR 방법은 중재이다. 중재는 소송이 갖고 있는 법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재는 당사자 자치원칙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전문가인 제3자에 의해 신속·간편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판결의 근거가 법률에 의존하지만, 중재는 중재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1960년대 중재법의 제정과 함께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된 이후로 발전되어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확대·개편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93년도부터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하여 부산과 영남지역의 무역클레임을 상담, 알선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해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부산지역 클레임 현황

부산지역 무역기업의 클레임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본부에 접수된 사건이 공식적인 자료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클레임은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사건은 2000년도에는 10건 2001년도에는 20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약 30건 내외의 클레임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2〉 부산지역 무역기업의 클레임 실태

년도	중 재		조 정(알선)	
	건 수	금 액(USD)	건 수	금 액
2000	10	2,217,840	54	2,488,249
2001	20	5,580,689	47	3,045,278
2002	28	8,431,150	69	3,896,534
2003	29	3,468,272	53	5,148,257
2004	30	5,612,162	59	4,450,617
2005. 6. 30.	15	1,738,663	27	840,796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본부

반면에 조정사건은 50건에서 60건 정도에서 접수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총 사건중 중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부산지역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³⁾. 이는 부산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영세업체가 많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만한 인원이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재제도의 유용성

(1) 소송과 중재

범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에 의한 해결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더욱 알 필요가 있게 되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재와 소송의 유용성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국가적 편견가능성여부이다. 국제사법제도로써 소송은 국가 목적과 관계가 있어 법관이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에 따른 편견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 자치원칙에 의하여 중립적인 장소에서 중립적인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로 당사자들이 선정함으로써 국가적 편견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전략적 고려에 의해 합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절차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⁴⁾.

둘째는 절차의 용의성여부이다. 가처분 사건 등은 소송절차가 중재절차에 비하여 효율적이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

3) 신군재·김경배,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제3호, 2003년9월, p.206.

4) 고학수, “중재를 통한 국제계약상의 분쟁해결 : 국제계약의 체결당시 고려사항”, 『인권과정의』 Vol.332, p.120,

의 원격성으로 인해 서류송달의 문제, 각종 증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증거조사나 증인소환 및 심문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문제로서 외국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반면에, 중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재는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거제출을 지연하거나 판정문 작성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절차진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는 사안의 전문성 및 기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자에 의한 판단여부이다. 즉, 소송은 관할재판권의 법지식과 경험이 많은 판사에 의해 행해지는 반면, 중재인은 분쟁이 되는 특정 사안의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⁵⁾. 특히,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언어, 관습, 법 제도 하에서 이를 조화시킨 특수한 법률관계가 발전되어 왔으며,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한다. 즉,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 이외에 운송인,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동시에 병행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해결과정에서 검정인을 개입시키고 이들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소송에서는 이들이 단순히 참고인으로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중재는 무역관행에 그리고 특정 거래의 전문성에 매우 친숙하다고 인정되는 중재인에 의해 판정을 받게 된다.

넷째는 국제적인 효력여부이다. Alessandra Casella(1992)는 중재는 국제분쟁에서 특권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조약은 중재판정이 법원의 결정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강제집행력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⁶⁾. 즉, 특정국 법원의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기

5) 고태수, 전계논문, p.122

6) Alessandra Casella,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4136., 1992 Aug., p.3.

위한 별도의 국제조약이 없어 집행하기 어려운 반면에 중재는 New York Convention(1958) 및 각국 간 중재협정에 의해 외국에서도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집행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와같은 예외상황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집행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⁷⁾.

다섯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인지 여부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불복절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즉, Meyerowitz(1985)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은 중재의 가장 중요한 이익중 하나라고 하였다. 소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미국 AAA의 경우는 4-5개월 소요되고 있다⁸⁾. 그렇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서 중재판정집행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재판정의 유효성 자체에 대해 다툼이 생긴다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⁹⁾.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을 가지고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하겠다.

다섯째, 마케팅 활동의 위축여부이다. 기업들이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증거자료를 마련하거나, 변호사와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 등 소송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많은 장애를 줌으로써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이다. 우리나라의 마을 생활은 고조선 때부터 철저히 협동으로 유지되어 왔다. 조선시대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 네 가지

7) 고학수, 전계논문, p.124

8) Meyerowitz S.M., "The Arbitration Alternative", ABA Journal, The Lawyer's Magazine, 1985 Feb., Volume 71, No.79, p.80

9) 고학수, 전계논문, p.120,

강목을 주된 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향약을 통해서 조정, 중재 제도가 마을 생활의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¹⁰⁾.

중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위와같은 유용성여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Casella(1992)는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였다¹¹⁾. 첫째,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덜 공식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 한다. 즉, 중재는 법원절차보다 신속하게 결정되며, 덜 알려지며, 소송보다 덜 논쟁적이다. 둘째, 당사자들은 법원의 법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사분쟁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즉, 판사는 무역관행에 친숙한 중재인보다 덜 적합하고, 덜 신뢰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국제 사건에 특히 유용한데, 이는 국제비즈니스관습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각국 법은 서로 다르며, 법원의 결정은 중재판정보다 해외에서 강제집행하는데 있어 종종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원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유용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¹²⁾.

(2) 조정과 중재

분쟁은 당사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차선책으로는 제3자가 당사자간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과 중재 모두를 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해있는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1996.3, p.37.

11) Alessandra Casella, op.cit., pp.7-8.

12) Meyerowitz S.M., op.cit., p.78

이들 2가지 업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중재보다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보다 유용한 해결방법이다. 조정은 소액분쟁에 많이 이용하고 중재는 고액분쟁에 적합함으로써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어야 실익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둘째, 비금전적 분쟁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조정으로, 금전적 청구를 원할 경우에는 중재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상 중재 사건은 신청서에 중재신청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결정이 내려진 반면에 조정은 현금배상 이외에 비금전적 청구인 현물, 지속 거래를 통한 해결 등의 방법으로 합의가 도출된다.

셋째, 조정은 엄격한 법적 권리·의무보다는 사업상의 이해관계(interest-based procedure)에 바탕을 둔 분쟁해결방법에 유용하다. 조정은 현물 배상, 지속거래 및 기타 합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1%를 차지한 반면에 중재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420건 중 지속적인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화해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19.8%를 차지하였다¹⁴⁾. 이를 토대로 볼 때, 조정은 지속적인 거래가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의 중요한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며, 중재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의무(right-based procedure)를 고려하여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해결방법이다¹⁵⁾.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채증법칙에 의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점차 소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중재는 과거사실

13) Sander & Goldberg에 의하면, 신속성과 최소비용 측면에서 조정은 매우 만족하는 반면에 중재는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p.33에서 재인용).

14) 신군재·김경배, 전개논문, pp.207-208

15) Sander & Goldberg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조정은 관계유지·개선에 매우 만족시키는 반면에 중재는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김지호, 전개논문, p.33면에서 재인용)

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과거지향적인 반면에 조정은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분쟁해결절차 및 결과에 통제권을 원할 경우는 조정을, 절차 및 결과 모두를 제3자에게 맡기고자 할 경우는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인은 최종 결정권이 없어 당해 분쟁에 대한 책임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당사자가 가지는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통제권이 없고 제3자인 중재인은 당해 분쟁의 결정권을 갖는다.

다섯째, 당사자를 직접 설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을, 제3자를 설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가 유용한 해결방법이다. 조정에서는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며, 조정인은 양당사자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도관(conduit)으로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중재에서는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중재인을 설득한다. 따라서 조정에서 조정인은 분쟁의 쟁점사항 이외에도 당사자간 인간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반면에 중재에서 중재인은 당사자간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분쟁의 쟁점사항에 보다 비중을 두는 해결제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토대로 살펴볼 때, 조정은 소액분쟁이나 당사자들이 사업관계의 계속성과 지속성을 원할 경우, 자신들의 분쟁을 제3자에게 맡기되, 결과에 대한 자신들이 직접 통제권을 갖고자 할 경우, 금전적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 등에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서 미국의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 court)은 소액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문제보다는 인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 20개주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¹⁶⁾. 반면에 중재는 상대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쟁

16) Susan E. Raitt, Jay Folberg, Joshua Rosenberg and Robert Barrett, "The Use of Mediation in Small Claims Court", 9 Ohio St. J. on Disp. Resol. 55, 1993, pp.61-64

을 일으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당사자들이 선택한 제 3자에 의한 한번의 절차로 당사자간 우호적인 해결과 최종 해결을 원할 경우, 분쟁금액이 커 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기를 원할 경우 그리고 금전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유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3. 연구 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중재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부산지역 무역업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실태조사를 행하였다. 중재의 유용성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재의 필요성 및 중재인의 자질과 중재의 결과와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중재의 필요성은 중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 중재의 필요성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 중재의 필요성은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 중재의 필요성은 차후의 중재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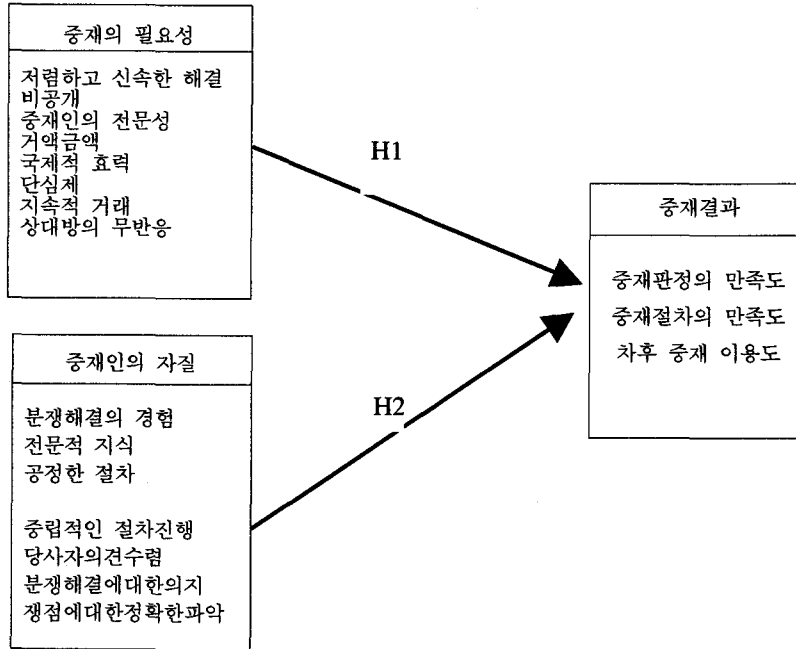
가설 2 : 중재인의 자질은 중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 중재인의 자질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 중재인의 자질성은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 중재인의 자질은 차후의 중재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표 2〉 강제집행 거부 이유



Ⅲ. 부산지역 무역기업의 중재제도 유용성에 대한 가설검증

1. 표본 및 분석방법

(1) 자료모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재의 필요성 및 중재인 자질이 중재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자

료를 조사하였다. 설문외 구성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부산지역의 무역업체들이 중재의 장점과 중재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모집은 조사원이 부산소재 무역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4월1일부터 동년 5월4일까지 실시한 조사하여 <표 III-1>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2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78부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 표본의 현황

구 분	총 배포부수	폐기부수	분석부수	회수율
부산지역무역업체	200	22	178	89%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인 부산지역의 무역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한국무역협회부산지부의 무역업 신고업체 중에서 추출·조사하였다.

<표 III-2>에 나타나 있듯이 설립연도는 5년이상 된 기업들이 152개 업체(85.4%)로 가장 많았다. 종업원수는 30명이하인 기업들이 92개사(51.7%)를 차지하여 기업규모면에서 영세업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거래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가 124개사(69.7%)를 차지하였다. 거래처의 수는 6개이상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98개업체로 55.1%를 차지하였고, 판매자(142개사)가 구매자(36개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부산지역기업들은 주로 영세업체가 많으며, 주 거래국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중 47.2%는 무역실무의 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을 하고 있으며, 61.8%가 분쟁해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응답자의 분포

구 분	빈 도		%
	항 목 내 용	빈 도	
설립연도	3년이하	14	7.9
	3-5년	12	6.7
	5년이상	152	85.4
	계	178	100
종업원수	10명이하	47	26.4
	10-30명	45	25.3
	31-50명	20	11.2
	51-100명	28	15.7
	100명이상	38	21.3
	계	178	100
거래국가	중국	55	30.9
	일본	34	19.1
	동남아	35	19.7
	북남미	12	6.7
	유럽	34	19.1
	중동	6	3.4
	아프리카	2	1.1
	계	178	100
거래처의 수	2개이하	20	11.2
	3-5개	60	33.7
	6개이상	98	55.1
	계	178	100
역할	판매자	142	79.8
	구매자	36	20.2
	계	178	100
무역실무교육	있다	94	52.8
	없다	84	47.2
	계	178	100
분쟁해결교육	있다	66	37.1
	없다	110	61.8
	무응답	2	1.1
	계	178	10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재의 필요성 및 중재인의 자질에 대한 부산지역 무역업체들의 인식도가 중재결과에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그림 II-1>의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중재의 필요성, 중재인의 자질 및 중재결과 등 3개의 construct로 구분하였다<표 III-3 >. 중재의 필요성은 다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지속적 거래 및 상대방의 무반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재인의 자질은 분쟁해결의 경험, 전문적 지식, 공정한 절차, 독립적인 절차진행, 당사자의견수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및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재결과는 중재판정의 만족도, 중재절차의 만족도 및 차후의 중재이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3> 변수의 측정

construct	변 수	측 정 내 용
중재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지속적 거래 상대방의 무반응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construct	변 수	측 정 내 용
중재인자질	분쟁해결의 경험 전문적 지식 공정한 절차 중립적인 절차진행 당사자의견수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중재결과	중재판정의 만족도 중재절차의 만족도 차후의 중재이용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 가설검증결과 및 해설

(1) 가설검증결과

1) 중재의 필요성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1-1은 중재의 필요성이 판정결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의 필요성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 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지속적 거래 및 상대방의 무반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표 III-4>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 하에서 12.435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공개($t=-2.076$, $p<0.05$), 중재인의 전문성($t=5.742$, $p<0.01$), 거액금액($t=-2.575$, $p<0.05$) 국제적 효력($t=3.529$, $p<0.01$), 및 단심제($t=3.057$, $p<0.05$) 및 지속적 거래($t=2.366$, $p<0.05$) 등이 중재판정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중재필요성과 판정결과의 만족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255	.443		-.577
비공개	.062	.067	.078	.935
중재인의 전문성	-.156	.075	-.197	-2.076**
거액금액	.489	.085	.435	5.742***
국제적 효력	-.207	.080	-.236	-2.575**
단심제	.239	.068	.275	3.529***
지속적 거래	.261	.085	.287	3.057**
상대방의 무반응	.151	.064	.175	2.366**
상대방의 무반응	.112	.072	.113	1.557
전체모형	F-value 12.435 R2 : 0.460 Adj R2 : 0.423			

* p<.10 ** p<.05 *** p<.01

2) 중재의 필요성은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1-2는 중재의 필요성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의 필요성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 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지속적 거래 및 상대방의 무반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표 III-5 >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의 필요성과 중재절차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하에서 15.068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t=2.962, p<0.01), 비공개(t=-3.061, p<0.01), 중재인의 전문성(t=2.431, p<0.05), 거액금액(t=-2.005, p<0.05) 국제적 효력(t=6.994, p<0.01), 단심제(t=1.872, p< 0.10) 및 지속적 거래(t=3.335, p<0.01) 등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중재필요성과 중재절차의 만족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052	.428		-.122
비공개	.189	.064	.235	2.961***
중재인의 전문성	-.220	.072	-.274	-3.061***
거액금액	.198	.082	.175	2.431**
국제적 효력	-.154	.077	-.175	-2.005**
단심제	.453	.065	.517	6.994***
지속적 거래	.154	.082	.170	1.872*
상대방의 무반응	.205	.061	.234	3.335***
	.088	.069	.090	1.286
전체모형	F-value 15.068 R2 : 0.512 Adj R2 : 0.478			

* p<.10 ** p<.05 *** p<.01

3) 중재의 필요성은 차후의 중재이용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1-3은 중재의 필요성이 차후의 중재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의 필요성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 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지속적 거래 및 상대방의 무반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6〉 중재필요성과 차후의 중재이용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1.356	.615		2.205
비공개	.026	.092	.028	.288
중재인의 전문성	-.052	.103	-.056	-.507
거액금액	.122	.117	.093	1.043
국제적 효력	-.306	.111	-.298	-2.766***
단심제	.320	.093	.314	3.432***
지속적 거래	.233	.118	.221	1.977*
상대방의 무반응	.285	.088	.279	3.224***
	-.097	.098	-.085	-.985
전체모형	F-value 4.897 R2 : 0.254 Adj R2 : 0.202			

* p<.10 ** p<.05 *** p<.001

회귀모형은 <표 III-6>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의 필요성과 차후의 중재이용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하에서 4.897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거액금액(t=-2.766, p<0.01) 국제적 효력(t=3.432, p<0.01), 단심제(t=1.977, p< 0.10) 및 지속적 거래(t=3.224, p<0.01) 등이 차후의 중재 이용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재인의 자질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2-1은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인의 자질로써 분쟁해결의 경험, 전문적 지식, 공정한 절차, 중립적인 절차진행, 당사자의견수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및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표 III-7 >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하에서 13.836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정한 절차(t=-2.533, p<0.05) 당사자의견수렴(t=5.524, p<0.01),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t=2.677, p<0.01)가 중재판정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중재인의 자질과 판정결과의 만족도간 회귀분석결과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분쟁해결의 경험	1.960	.488		4.017
전문적 지식	-.100	.104	-.093	-.960
공정한 절차	-.133	.128	-.116	-1.042
중립적인 절차진행	-.350	.138	-.311	-2.533**
당사자의견수렴	-.076	.145	-.063	-.528
분쟁해결에 대한의지	.738	.134	.613	5.524***
쟁점에 대한정확한파악	.358	.134	.295	2.677***
	-.084	.099	-.074	-.855
전체모형	F-value 13.836 R2 : 0.447 Adj R2 : 0.414			

* p<.10 ** p<.05 *** p<.01

5) 중재인의 자질은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2-2는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인의 자질로써 분쟁해결의 경험, 전문적 지식, 공정한 절차, 중립적인 절차진행, 당사자의견수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및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표 III-8>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 하에서 9.906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당사자의견수렴($t=3.750, p<0.01$),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t=2.210, p<0.05$),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t=1.793, p<0.10$)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중재인의 자질과 중재절차의 만족도간 회귀분석결과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분쟁해결의 경험	.939	.503		1.867
전문적 지식	-.006	.107	-.006	-.054
공정한 절차	-.202	.131	-.185	-1.544
중립적인 절차진행	-.055	.142	-.052	-.391
당사자 의견 수렴	-.170	.148	-.146	-1.145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513	.137	.445	3.750***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303	.137	.261	2.210**
	.181	.101	.165	1.793*
전체모형	F-value 9.906 R2 : 0.370 Adj R2 : 0.333			

* $p<.10$ ** $p<.05$ *** $p<.01$

6) 중재인의 자질은 차후 중재이용도에 영향을 미친다의 검증

가설 2-3은 중재인의 자질이 차후 중재절차의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

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인의 자질로는 분쟁해결의 경험, 전문적 지식, 공정한 절차, 중립적인 절차진행, 당사자의견수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및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9> 중재인의 자질과 차후의 중재이용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된회귀계수(β)	t값
	B	표준오차		
분쟁해결의 경험	3.065	.657		4.665
전문적 지식	-.304	.139	-.255	-2.184**
공정한 절차	-.012	.171	.009	-.071
중립적인 절차진행	-.356	.185	-.284	-1.923*
당사자의견수렴	-.109	.194	-.081	-.565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	.765	.179	.569	4.279***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125	.179	-.092	-.698
	.189	.132	.148	1.430
전체모형	F-value 4.442 R2 : 0.209 Adj R2 : 0.162			

* p<.10 ** p<.05 *** p<.01

회귀모형은 <표 III-9>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F값이 각각 P=0.000하에서 4.442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쟁해결의 경험(t=-2.184, p<0.05), 공정한 절차(t=-1.923, p<0.10), 및 당사자의견수렴(t=4.279, p<0.01)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증결과의 해석

앞 절의 가설검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재의 필요성이 판정결과의 만족도와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재인의 전문성, 거액금액, 국제적 효력, 단심제 및 지속적 거래 등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문헌에서 언급한 중재의 장점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와 장점은 중재판정의 만족도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 무역업체들이 중재제도도 소송과 같은 재판을 하되, 단심제이면서 국제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으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중재의 필요성이 차후의 중재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적 효력, 단심제의 장점과 향후 상대방과 지속적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후의 중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액금액인 경우에는 차후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액금액의 분쟁당사자인 경우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단절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중재판정부에서 화해를 권유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판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재인의 당사자의견수렴,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가 중재판정에 만족을 주고 있지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도 소송처럼 중재판정을 내릴 때에는 엄격한 채증법칙이 적용되는데, 부산의 영세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증거제시능력이 부족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절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관한 관계를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재인의 당사자의견수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는 중재절차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

다섯째, 중재인의 자질이 차후 중재절차의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차후에도 중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반면에 중재인의 분쟁해결의 경험 및 공정한 절차는 차후 중재절차의 이용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V. 결 론

범지구화의 시대로 기업들은 무한경쟁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활동에 기업의 전 자원들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으로 거래가 증가되면, 기업들은 거래처와 크고 작은 분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과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국제적 효력, 단심제, 전문가에 의한 해결, 절차의 비공개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재가 많은 학자들이나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로, 실제 부산지역의 무역업체들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재의 장점과 중재인의 자질이 중재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무역업체들도 대체적으로 중재의 장점과 중재인의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중재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비공개, 중재인의 공정한 절차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부산 소재 무역업체들에 대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송과 다른 점 특히,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단심

제로 끝나기 때문에 중재절차를 임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유능한 중재인을 발굴하고, 중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재인들에게도 중재와 소송과의 차이점 및 공정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중재인의 교육시에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견수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과 공정한 절차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한 절차진행은 비록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지역에서 중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공정한 절차진행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측정방법에 있어 설문지법만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자의 작성태도에 따라 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있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법 또는 관찰법을 설문지법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실증분석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취약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재사건의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를 대상으로 중재의 장점 및 중재인의 자질에 대한 인식도를 토대로 분석하여 기존의 문헌적 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재절차를 이용한 당사자 및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장점 및 중재인의 자질에 중재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논문으로 향후 연구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고학수, “중재를 통한 국제계약상의 분쟁해결 : 국제계약의 체결당시 고려사항”, 「인권과정의」 Vol.332
-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 p.7
- 노형진, 「한글SPSSWIN에 의한 알기 쉬운 다변량분석」, 형설출판사, 1999.8.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1996.3.
- 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부, 「'96부산지역 무역분쟁실태조사보고서」, 1996.
- 신군재·김경배,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9.
- 최정호, “한국기업의 무역클레임 실태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경영논총」 제14-1집,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3.
- 최정호·이재현, “한국수출기업의 무역클레임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경영논총」 제15-1집,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4.
- 廣田常久, “紛争解決手段としてのADR”, 「ジュリスト」, No.1207, 2001.9.1
- Alessandra Casella,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4136,, 1992 Aug..
- Bercovitch J. and Houston A., “Why Do They Do It Like Thi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4 No.2, April 2000.
- Clive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7th ed., Stevens & Sons, 1980.
- Cyntbia E. Cohen and Murray E. Cohen, “Relative Satisfaction with ADR”,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7, No.4, Nov. 2002/Jan. 2003.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McGillicuddy N.B., Welton G.L. and Pruitt D.G., "Third Party Intervention : A Field Experiment Comparing Three Differen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1.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1987.

Meyerowitz S.M., "The Arbitration Alternative", ABA Journal, The Lawyer's Magazine, Volume 71, No,79, 1985 Feb..

M. Hunter, J. Paulsson, N. Rawding and A. Redfern, The Freshfields Guide to Arbitration and AD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Ponte L. M. and Cavena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Business」, West Educ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9.

Susan E. Raitt, Jay Folberg, Joshua Rosenberg and Robert Barrett, "The Use of Mediation in Small Claims Court", 9 Ohio St. J. on Disp. Resol. 55, 1993.

Wall J. A., "Medi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7, No.1, March 1993.

Zubek J. M, Pruitt D. G, Peirce R. S., McGillicuddy N. B. and Syna H., "Disputant and Mediator Behaviors Affecting Short-Term Success in Medi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6, No.3, Sep. 1992

[http : //www.kcab.or.kr/journal/296_5.html](http://www.kcab.or.kr/journal/296_5.html)

[http : //www.texasadr.org/adremployee.html](http://www.texasadr.org/adremployee.html)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Busan firms' Perception of Usefulness of Arbitration System

Bong-Gyu Park

Koon-Jae Shi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irms must operate all useable resources into marketing activities to survive on the unlimited competition. However, firms face many kinds of disputes with counterparts because of aggressive marketing activities. There are two ways of solving these disputes : litigation and arbitration. As compared to litigation, arbitration is more popular because of such merits as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 trial system, the settlement by specialists, and the confidential proceedings.

This paper examines trade firms' perception 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but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closed-door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a fair procedure of arbitrator. Though this paper has several limitations,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merits and quality of arbitrator and outcomes as a first empirical paper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method and direction.

Key Words : Perception of Arbitration Outcomes, Use of Arbitration System,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quality of arbitrators, arbitration procedures, Busan firms